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2월 2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양준모 | www.cubs.or.kr

교원단체 조례로 법외노조 전교조 지원하려는 진보교육감과 야당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박주희)

- 지난 1월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재차 확인했다.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하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수차례 무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고,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그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이후 2년 이상 진행돼 온 전교조 법적 지위 다툼이 일단락을 맺었다. 전교조는 즉각 대법원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이제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잃었으며 노동조합법인이 아니다. 교원노조로서 각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하고, 휴직처리로 되어있던 노조 전임자들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사업예산과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지원도 그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조합비 원천징수도 불가능해져 법외노조로서의 전교조에게는 결국 예산 문제가 활동의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이다.
- 한편, 2014년 4월 국회에서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¹⁾이 통과되면서, 지자체가 보조금 지출을 하려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 이에 따라 지방의회들이 교원단체의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교육청이 민간이전금 등으로 교원단체활동지원 사업명으로 교원단체를 지원했다면, 이제 조례에 근거한 단체와 지원범위내의 사업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이용해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법외노조 전교조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바른사회가 17개 광역의회 의안정보를 확인한 결과, 현재 9개 지역에서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1개 지역은 조례가 발의된 상태이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직원단체 정의 또는 종류, 지원대상사업의 범위이다. 조례들은 기본적으로 교직원단체나 교직원단체를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노동조합에 따른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대상의 범위도 교원의 전문성이나 교육활동 제고 등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표1>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

	기본 공통 내용
정의/종류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교원노동조합
사업대상 범위	1. 학생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2.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 사업 4.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런데 일부 지역이 조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법외노조인 전교조까지 포함될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법외노조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지원이 끊어질 것을 예상하고 진보교육감이나 지방의회 야당이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지원하려 한 시도라고 해석된다.

- 서울(본회의 통과), 전남(본회의 통과), 광주(발의)는 조례안에서 교직원단체의 범주를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OO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되면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에도 교육감이 자의적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교조의 지원 근거를 조례를 통해 명문화한 것이다.
- 더욱이 서울, 광주 조례안의 지원대상사업에는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교원의 전문성이나 교육활동 제고 등 교원단체의 기본활동 이외에 교육감 뜻대로 임의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대상과 사업범위에 빈틈을 두는 것은 사실 법적 지위 상실을 염려한 전교조가 바라던 점이다. 이는 부산 지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입법예고 기간에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 및 사업' 내용을 추가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했으나 다행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 교육의원도 처음 조례안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그 밖의 교직원단체'를 포함시켰으나 의회 조례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표2>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현황

(2016.1.29. 기준)

지역	교육감	의회 다수당	의회 상황	발의자	조례 내용	
					정의	지원대상사업 범위
서울	조희연(진보)	야당	본회의 통과 (15.12.21)	박호근 (새정연)	*그 밖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부산	김석준(진보)	여당	본회의 통과 (15.10.16)	교육감	전교조지부장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 및 사업' 내용 추가하도록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미수용	
대구	우동기(보수)	여당	-	-	-	-

인천	이청연(진보)	여당	본회의 통과 (15.9.14)	교육감	기본내용	기본내용
광주	장휘국(진보)	야당	의안 접수 (16.1.18)	김영남 (무소속)	*그 밖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대전	설동호(중도)	야당	-	-	-	-
울산	김복만(보수)	여당	본회의 통과 (15.10.15)	교육감	기본내용	기본내용
세종	최교진(진보)	야당	-	-	-	-
경기	이재정(진보)	야당	본회의 통과 (15.10.15)	김치백 (새정연)	기본내용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강원	민병희(진보)	여당	-	-	-	-
충북	김병우(진보)	여당	본회의 통과 (15.10.21)	김양희 (새누리)	기본내용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충남	김지철(진보)	여당	본회의 통과 (15.12.16)	김석곤 (새누리)	기본내용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전북	김승환(진보)	야당	-	-	-	-
전남	장만채(진보)	야당	본회의 통과 (15.12.16)	교육감	*그 밖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기본내용
경북	이영우(보수)	여당	-	-	-	-
경남	박종훈(진보)	여당	-	-	-	-
제주	이석문(진보)	여당	본회의 통과 (15.9.15)	오대익 (교육의원)	원래 조례안에는 '제주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그 밖의 교직원단체'가 포함되었으나 의회에서 삭제	

□앞서 살펴본대로,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상황을 틈타 몇몇 지역에서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서울, 전남, 광주 지역은 교육감 이념성향이 진보로 분류되고 의회 다수당이 야당인 곳이다.

- 이들 지역은 공교롭게도 누리과정 예산 의결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제로'로 만든 곳이다. 결국 의회 권력을 이용해 정치싸움을 벌이며 아이들은 나몰라라 해놓고선, 정치 투쟁과 이념투쟁으로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몰고 온 전교조 집단은 감싸안으려는 행동이다.

□아직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7개 지역이다. 이중 세종, 전북처럼 진보교육감과 다수당이 야당인 지역의 조례 제정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광주 의회 조례는 현재 발의 상태이므로 의회내부에서 우려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미 전교조 지원을 염두해 둔 내용을 조례에 삽입시킨 서울, 전남은 의회 구성상 조례를 당장 개정하긴 힘들듯 하다. 그렇다면 진보교육감이 전교조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지방보조 사업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교육감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 기준으로 사업과 지원예산을 심의해야 한다.